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

[시행 2023. 6. 11.] [조례 제5030호, 2023. 6. 9., 일부개정]

강원특별자치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라 한다)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화재 오인 행위 신고)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・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(전화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(팩스를 포함한다)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"그 밖의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.

1.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
2.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
3.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
4.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
5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
6.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

제3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)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"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"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) 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제3237호, 2007.12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(제3797호),2015.1.2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1)~(39) 생략

(40)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"소방본부장"을 "소방안전본부장"으로 한다.

(41)~(49) 생략

부칙 <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(제3855호), 2015. 7. 10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

(20)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소방안전본부장"을 "소방본부장"으로 한다.

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

부칙 <제4079호, 2016.11.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90호, 2019.4.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, 2023. 6. 9.>